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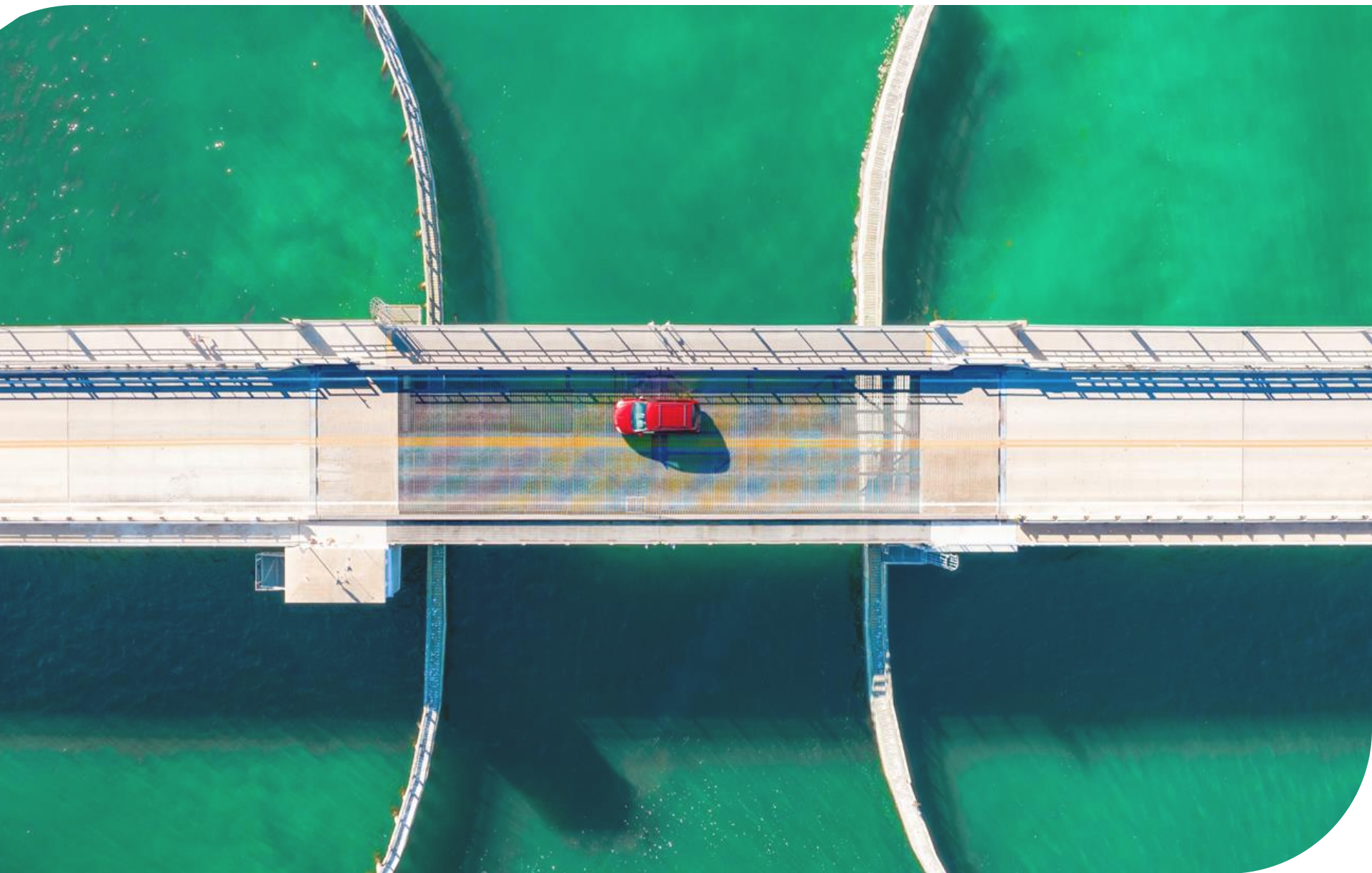


# 신규 법률 문서 및 주요 세무 정책 업데이트

2025년 3월

# Content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Grant Thornton 회계법인은 회계 및 외부 감사 분야의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최근 제정된 세무 정책을 고객 여러분께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 1. Law No. 56/2024/QH15

회계, 외부 감사, 조세행정, 개인소득세(PIT) 및 기타 일부 법률에 대한 보완 및 개정 사항

## 2. Official letter No. 302/TCT-CS

DDU 및 DAP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외국 계약자세(FCT) 영향

## 3. Official letter No. 418/TCT-DNNCN

사업자 및 비사업자와의 용역 계약에 대한 세무상 고려사항

## 4. Official letter No. 299/TCT-CS

개인 및 가구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PIT 과세소득 산정 기준



## 1. Law No. 56/2024/QH15 issued on 29 November 2024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제56/2024/QH15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일부 법률에 대한 다양한 개정 및 보완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회계, 외부 감사 및 세무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회계법

Law No. 88/2015/QH13 수정

### 회계감사법

Law No. 67/2011/QH12 수정

### 조세행정법 및 개인소득세법

Law No. 38/2019/QH14 on 조세행정법 수정

Law No. 04/2007/QH12 on 개인소득세법 수정

# 1. Law No. 56/2024/QH15 issued on 29 November 2024 (계속)

## 회계법 조항의 일부 보완 및 개정

1.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 규정처럼 고정된 형식을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작성자가 보다 유연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독자에게도 보다 유익한 방식으로 재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재무부는 국제회계기준과 베트남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회계기준 및 윤리 강령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베트남이 각 시기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국제기준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3.

회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 또는 이중언어(베트남어와 외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요청 시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 문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관할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베트남어 사용은 필수가 아닙니다.

4.

첫 회계연도 또는 최종 회계연도의 경우, 최대 3개월(연속된 월 기준)까지 직전 또는 차기 회계연도와 결산을 통합할 수 있으며, 통합 기간은 총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90일' 기준에서 '3개월'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 보고 체계에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전자 문서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재무제표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표시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규정은 재무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7.

의사 결정권자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회계사는 자신의 의견을 문서화하여 상급자나 관할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 경우, 타인의 결정 사항을 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계사를 보호하고, 회계 업무 수행 중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Law No. 56/2024/QH15 issued on 29 November 2024 (계속)

회계법 조항의 일부 보완 및 개정

## 01

### 감사보고서의 서명 기한

동일한 피감사 법인에 대해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5년 연속으로 감사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감사인이 같은 피감사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다시 서명하기 위해서는 재무부가 규정한 일정 기간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위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02

### 회계감사인 변경

동일한 피감사 법인에 대해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서명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회계법인 또는 외국 회계법인의 베트남 지점을 5년 이상 연속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하는 공인회계사를 최대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 03

### 연례 지정감사 대상

연례 지정감사 대상에 대규모 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자기자본 1,000억 VND 초과 및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 1. Law No. 56/2024/QH15 issued on 29 November 2024 (계속)

## 조세행정법 및 개인소득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

### a. 이커머스 (“EC”) 및 온라인플랫폼 (“DP”) 기반사업

베트남에서 EC/DP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베트남 내에서 세무 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결제 기능을 보유한 EC/DP를 운영하거나 기타 디지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은,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개인 또는 가구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 및 사업자가 베트남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EC/DP 운영 기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5년 2월 4일, EC/DP 세무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3월 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급자는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시 세무 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b.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정이 아직 통지되지 않았거나 해당 신고서가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에 포함된 세금 신고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대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c. 조세행정 절차상 세무 당국에 대한 보상 청구 권한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세무 당국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책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무 당국은 과오납된 세금, 이자 및 가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의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 d. 세금환급결정 권한의 추가

세금 환급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세금 환급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리스트에 세무서 및 지역 세무서장의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요건을 충족하는 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 Official letter No. 302/TCT-CS dated 17 January 2025

(국세청에서 하띤성 세무서로 이관된 FCT (외국인계약자세) 케이스)

베트남 기업과 외국 계약자가 **DDU(관세 미납 인도) 및 DAP(지정장소 인도)** 조건의 인코텀즈에 따라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베트남 내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경우
- 구매 계약에 설치, 시험, 보증, 유지보수 등 베트남 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거나, 관련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외국 계약자의 세무 의무가 특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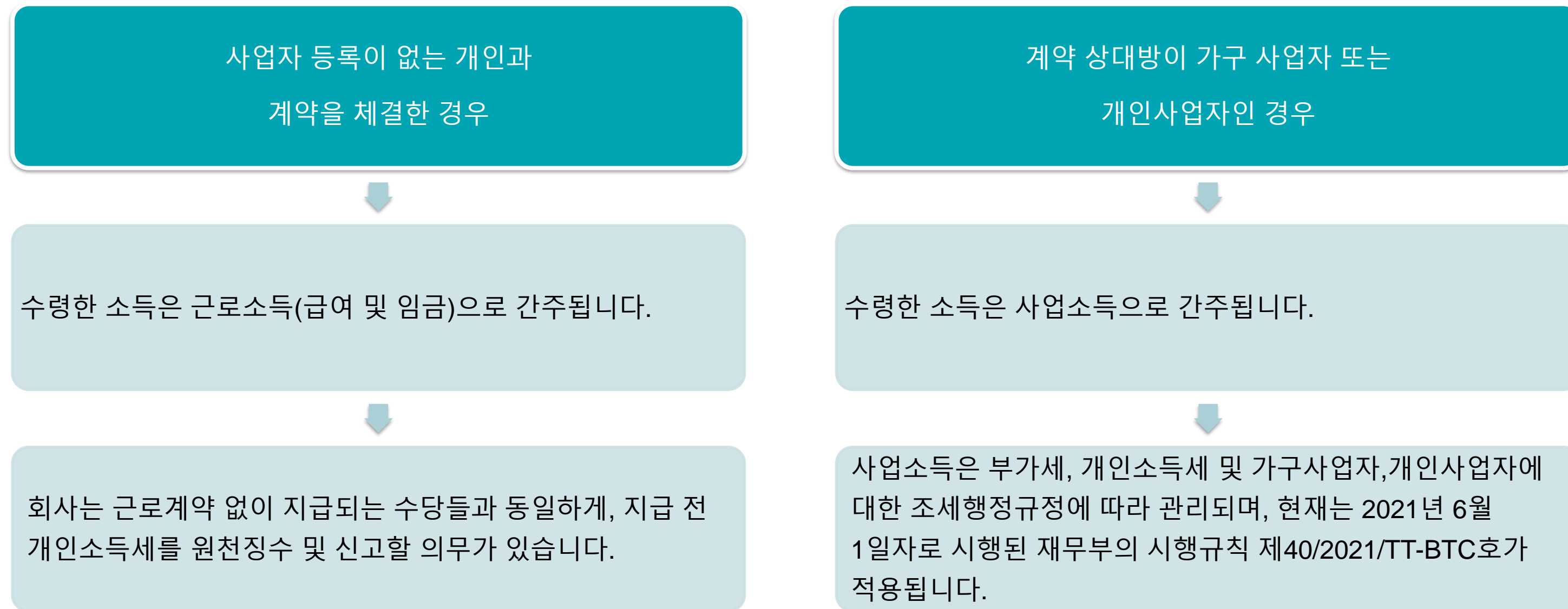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무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단계에서 부가가치세(VAT)부과
  - 외국인계약자세(FCT)- 물품 판매에 따른 과세소득에 대해 1% 법인세율 적용
- 위의 세무 적용 사항은 인코텀즈 D 그룹 조건이 적용되는 유사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Official letter No. 418/TCT-DNNCN dated 23 January 2025 (국세청에서 Dak Nong성 세무서로 이관된 PIT(개인소득세) 케이스)

회사가 개인과 판매대리계약, 협력계약, 서비스계약, 통신 및 배송 서비스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Official letter No. 299/TCT-CS dated 17 January 2025

(국세청에서 성/시 세무서로 이관된 개인 및 가구 부동산 양도소득의 PIT 과세소득 산정 지침)

### 토지 사용권만 양도하고 지상 자산이 없는 경우

PIT 과세소득은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성 인민위원회가 공시한 토지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포함) 양도

-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는 인프라 시설, 주택, 건축물, 농작물, 다년생 식물 등이 포함됩니다..
- PIT 과세소득은 각각의 양도 시점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주택 및 토지 또는 분양권(미완공 부동산) 양도의 경우, PIT 과세소득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의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 2007년 11월 21일 국회에서 제정된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2015년 2월 12일 정부령 제12/2015/ND-CP호 2015년 6월 15일 재무부 시행규칙 제92/2015/TT-BTC호 (제17조 제1항 b목)



# Contact

Please study the newly issued regulations and review the internal compliance procedur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customs tax as well as reduce errors in the process of filing and preparing documents that could lead to additional tax obligations or administrative penalty.

Please contact the experts of Grant Thornton Vietnam for in-depth advice if you have any inquir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x and customs compliance.

Please visit our [Tax Hub](#) to view more information

##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http://grantthornton.com.vn)

## Hoang Khoi

Senior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mailto:khoi.hoang@vn.gt.com)

##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mailto:ngan.bui@vn.gt.com)

## Hoang Viet Dung

Tax Director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mailto:dung.hoang@vn.gt.com)

## Kim Minje

Korea Desk Director  
D +84 24 3850 1678  
E [minje.kim@vn.gt.com](mailto:minje.kim@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mailto:valerie.teo@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mailto:thuphuong.nguyen@vn.gt.com)

## Dang Hai Ha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1  
E [my.dang@vn.gt.com](mailto:my.dang@vn.gt.com)

##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mailto:tho.lac@vn.gt.com)

## Do Vu Bao Khanh

Tax and Transfer Pricing Director  
D +84 28 3910 9277  
E [khanh.do@vn.gt.com](mailto:khanh.do@vn.gt.com)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